

「환경신기술지정」제도

환경부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환경부 자체 훈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환경기술평가제도를 지난 8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환경신기술지정]제도와 [환경기술검증]제도로 나누어 2000. 10월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그 우수성을 검증 받지 못하여 애를 태웠던 신기술 개발자는 국가로부터 환경신기술지정 또는 환경기술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더욱 넓게 열리게 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 편집부 >

- ◎ 환경기술평가는 기술개발자(신청인)가 충분히 연구·개발한 후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 등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 환경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기술을 지정 또는 검증 받는 제도로써 신기술개발자 뿐 아니라 상용화된 기술의 보유자도 자기 기술의 우수성을 검증 받을 수 있다.
 - 『환경신기술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자가 그간의 연구·개발을 통한 처리성능을 제시하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기술을 지정 받으며, 공공시설의 입찰참여시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 『환경기술검증』은 기술개발자가 개발된 기술을 검증 받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를 제시하고, 환경부지정 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시험·분석 등 현장검증을 통하여 신기술 또는 핵심기술을 평가해 주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입찰참여시 1.0점의 가점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 ◎ 환경신기술지정제도의 장점은 충분한 성능시험 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신기술지정을 신청하여 서류심사에 의하여 신속히 지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환경기술검증제도는 성능시험자료가 부족하여 평가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기술을 검증 받을 수 있다.
- ◎ 평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환경신기술지정의 경우는 심사에 필요한 수수료 200만원이며, 환경신기술검증인 경우에는 수수료 200만원에 현장평가시 소요되는 실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평가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며, 또한 환경기술을 최초로 산업화할

-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에서 장기저리(연이율 7.5%, 8년 상환)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 ◎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신기술의 적용촉진을 위하여 시·도와 환경 관리공단 등 산하단체에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나 건설기술공모를 할 때에 국산신기술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가점 혜택과 함께,
 - 공사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공공시설공사 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민간실적도 인정하도록 완화하고,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평가받은 시설의 10배까지 적용(예시 : 소각시설의 경우 1일 10톤 처리시설로 검증 받은 경우 1일 100톤 처리시설까지 입찰 참가)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기술개발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기술평가제도 추진현황

- ◆ 국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신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기술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 ◆ 지자체 및 산업체 등 기술수요자가 이를 신뢰하고 신속히 채택토록 하여 국내 환경현안 문제의 조기해결, 환경기술시장 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1. 추진배경

- 환경기술이 새로 개발되어 아직 사용실적이 없는 기술은 기술의 현장 적용성 및 성능에 대한 정보와 신뢰도 부족으로 신기술의 보급 부진
- 신기술의 보급부진은 새로운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능력을 저하시키고 개발투자비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발전 저해
- 기술 수요자별로 기술과약을 위한 현장검증을 실

시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 발생

2. 관련근거

- 환경신기술평가사업계획 수립('97.10)
- 평가업무규정 제정(환경부훈령, '97.12) 및 개정('98.7,'99.10)
- 환경기술평가의 법제화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공포(00.2.3)
 - 동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공포(00.8.17, 30)
-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고시(환경부고시, 00.8.30)

3. 평가진행 현황

- 98.12 ~ 00.9월 환경부훈령에 의한 환경기술평가추진
 - 총 59건의 평가신청서를 접수하여 14건의 환경기술평가서 발급

(단위 : 건)

구분	신청	평가 진행중	평가서 발급	해약 및 취소
계	59	29	14	16
2000년 9월	16	11	6	13
1999년	29	18	8	3
1998년	14	-	-	-

- 2000. 9월부터는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법제화하여 평가추진
 - 법제화 전·후의 제도 비교

※ 법제화로 달라진 주요내용

『환경기술검증』 및 『환경신기술지정』으로 구분하여 평가

- 환경신기술지정 신설
 - 서류심사만으로 신기술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신청자의 편의도모

법제화 전·후의 제도 비교

구분	법제화 전	법제화 후
근거	○ 환경부 훈령 439호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평가서	○ 환경기술평가서	○ 환경신기술지정서 ○ 환경기술검증서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환경신기술지정 : 서류심사 ○ 환경기술검증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평가기관	○ 평가총괄 : 환경관리공단 ○ 평가기준제정 및 전문평가 기관 지정 : 국립환경연구원 ○ 현장평가 : 현장평가기관 (공단 외 6개 기관)	○ 평가총괄 및 전문평가기관 일원화 : 환경관리공단 ○ 현장평가 : 환경관리공단(필요시 현장평가기관 지정)

- 기존의 환경기술평가는 환경기술검증으로 변경

- ※ 신기술개발자의 현장적용시험실적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현장시험실적이 부족한 경우 환경기술검증을 신청하여 신기술을 현장검증을 통하여 평가
 - 현장시험실적이 충분한 경우 신기술지정을 신청하여 서류심사를 통하여 평가

4. 인센티브 부여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시 환경신기술의 실적 인정 및 가점 혜택
 - 근거 : 공공시설의환경신기술적용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466호, 2000. 9. 26)

《실적인정》

-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시설의 1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간주
- 단, 하 폐수 처리기술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의 규모가 50톤/일 이상인 경우에는 1만톤/일 이상인 시설의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며, 평가받은 시설의 규모가 50톤/일 미만인 경우에는 1만톤/일 미만인 시설의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가점부여》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건설기술공모

- 주공정신기술 가점으로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기술로서 환경신기술지정기술 1점, 그외 신기술지정 0.5점 (다만 당해분야의 시공·운영실적증명이 첨부된 경우는 1점)
- 단위신기술 가점은 단위신기술을 많이 적용한 응모작에 최대 1점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20%씩 감점(상대평가)

- ※ 환경신기술지정 및 환경기술검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기술과(02-500-4245)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02-5190-1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